

#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649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0. 23  
나. 회부일자 : 2000. 10. 23  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0. 10. 28

고성군수

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### 2. 개정이유

- 인·허가 및 복합민원업무의 One-stop처리 등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민원봉사과의 기존 조직을 종합민원실로 확대·개편하여 보다 향상된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골자

-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명칭 변경(안 제3조제1항)
- 부서간 업무조정(안 제3조제2항 및 제9조)
  - 자치행정과 → 소방서 이관 : 소방에 관한 업무 삭제
  - 종합민원실 → 도시과 이관 : 지가결정, 토지거래,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
  - 도시과 → 종합민원실 이관 :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,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
  - 농업기술센터 → 종합민원실 이관 : 농지이용관리에 관한 사항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가 본격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행정체제를 고객 중심인 「민·본위」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적 요청과 필요성이 제기되어
- 현재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인·허가 업무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과 국민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0년말까지 종합민원 전담기구인 허가과를 설치하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「시·군의 인·허가 전담기구설치 추진지침」이 시달 됨에 따라

- 인·허가 및 복합민원 업무의 One-stop처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8개 시·군의 사례를 모델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봉사과를 명칭 변경하여 인·허가 및 복합민원 업무전담 기구인 종합민원실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은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개선안이라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주민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종합민원실을 설치하면서 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및 지가결정 등 창구 즉결민원 부서를 도시과로 이관시키는 사유와 토지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지적서고에 출입하여 공부정리 등 작업을 계속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
- 답 : 도시과와 종합민원실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토지평가업무 수행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며, 공시지가확인원 발급 등 창구 민원은 현재와 같이 담당직원 1명을 종합민원실로 파견시켜 기존 업무를 수행할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임.
- 문 : 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인사행정담당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지, 아니면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 하였는지
- 답 : 실과장이 참석하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 졌으며, 토론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.

## 6. 토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0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